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·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
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본문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
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부이사관·
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
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
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
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직무등급은 가등급”을 “임용등급은 가급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

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기술서기관으로, 외과과장·피부과장·치과과장·안이비인후과장·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,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으로, 외과과장·피부과장·치과과장·안이비인후과장·약제과장·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3제1항 중 “부이사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2명”을 “27명”으로, “2명,”을 “7명,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2명), 조제·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(6급 1명, 7급 1명), 그 밖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,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7급 1명),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37조를 삭제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2, 별표2의2, 별표4, 별표5의2, 별표5의3, 별표8, 별표8의2 및 별표1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869
정무직 계	3
장관	1
차관	2
별정직 계	6
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	1
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	1
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	1
비서(6급상당)	3
일반직 계	859
고위공무원단	25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(비상안전기획관)	1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59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2
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(비서)	1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8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58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공업사무관·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290
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사서사무관·보건연	3

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
행정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	1
보건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	2
전산사무관	1
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	94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	12
행정주사 · 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	6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전산주사 · 약무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	68
행정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	1
행정주사 · 보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7
사서주사	1
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	3
약무주사	4
보건주사	17
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	1
운전주사	2
행정주사보	2
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	33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	6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	

송통신주사보 ·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	34
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	10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	1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	8
보건주사보	9
행정서기	36
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	8
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	4
행정서기 ·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	1
운전서기보	5
기록연구사	1
사무운영서기보	5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사진 및 비디오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양성평등정책 담당)	1
경찰공무원 계	1
경위	1

[별표 2의2]

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871
정무직 계	3
장관	1
차관	2
별정직 계	6
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	1
장관정책보좌관(3급상당 또는 4급상당)	1
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	1
비서(6급상당)	3
일반직 계	861
고위공무원단	25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(비상안전기획관)	1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59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2
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(비서)	1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8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58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 · 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공업사무관·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290

행정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	3
행정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	1
보건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	2
전산사무관	1
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	94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	12
행정주사 · 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	6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전산주사 · 약무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	68
행정주사 · 보건주사 · 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	1
행정주사 · 보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7
사서주사	1
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	3
약무주사	4
보건주사	17
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	1
운전주사	2
행정주사보	2
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	33
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	6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	34
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	10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	1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 사보	8
보건주사보	9
행정서기	36
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	8
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	4
행정서기 · 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	1
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	2
운전서기보	5
기록연구사	1
사무운영서기보	5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사진 및 비디오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양성평등정책 담당)	1
경찰공무원 계	1
경위	1

[별표 4]

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(제36조제2항 관련)

총계	220
일반직 계	220
고위공무원단	1
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	1
과학기술서기관	6
행정사무관	1
사회복지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보건사무관	1
간호사무관	1
행정주사	3
사회복지주사	1
보건주사	1
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	1
의료기술주사	2
약무주사	1
간호주사	14
공업주사	1
간호조무주사	1
행정주사보	2
보건주사보	1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 는 사서주사보	2
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	2
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	2

간호주사보	15
전산주사보	1
시설주사보	1
간호조무주사보	3
행정서기	6
보건서기	3
공업서기	2
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	2
의료기술서기	2
간호서기	30
시설서기	1
행정서기보	3
운전서기	1
간호조무서기	6
보건서기보	4
의료기술서기보	1
간호조무서기보	56
전산서기보	1
위생서기보	3
조리서기보	13
운전서기보	4
방호서기보	5
시설서기보	2
전기운영서기보	1
열관리운영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1
학예연구사	1
전문경력관 나군(치매관리 특수치료 담당)	1
전문경력관 다군(보장구제작담당)	1

[별표 5의2]

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4항 관련)

총계	35
일반직 계	35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 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2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·약 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2
행정주사·보건주사·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	5
행정주사보·보건주사보·시설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사 서주사보	12
전산주사보	1
행정서기·보건서기·시설서기·공업서기·사서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6
시설서기보	1
공업서기보	1
기계운영서기보	1
전기운영서기보	1
열관리운영서기보	1
전문경력관 나군(청사보안담당)	1

[별표 5의3]

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5항 관련)

총계	35
일반직 계	35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2
과학기술서기관·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	1
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	2
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	1
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	1
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	1
행정주사·보건주사·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	4
간호주사	5
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	1
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	1
간호주사보	6
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	2
의료기술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1
간호서기	1
행정서기보	1
보건연구관	1

[별표 8]

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7항 관련)

총계	17
일반직 계	17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약 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1
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	1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전산주사 · 약무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	4
보건주사	1
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	7
행정서기 ·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	1
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	1

[별표 8의2]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
(제36조제8항 관련)

총계	4
일반직 계	4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	1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1
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보건주사·전산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	1

[별표 12]

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(제41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 관련)

1.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(존속기한: 2024년 2월 29일)

총계 17

일반직 계 17
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
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
·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3
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
· 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7

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보건주사·전산주사·약무주
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

행정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보건주사보·전산주사보
· 방송통신주사보·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

2. 필수의료지원관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 1

일반직 계 1

고위공무원단 1

3. 필수의료총괄과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 8

일반직 계 8
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3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보건주사 · 전산주사 · 약무주 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	1
행정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대변인) ① (생략) ② 삭제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, 홍보기획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</u> 보한다. ④ · ⑤ (생략)	제2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보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</u> ----- -----.
제2조의2(감사관) ① (생략)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</u> 보한다. ③ · ④ (생략)	제2조의2(감사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3조의2(기획조정실) ① ~ ⑤ (생략) ⑥ 기획조정실에 보건복지상담센터, 기획조정담당관, 재정운용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, 규	제3조의2(기획조정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

제개혁법무담당관, 양성평등정책담당관, 정보통계담당관, 국제협력담당관, 통상개발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,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⑩ (생략)

제5조(운영지원과장)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6조(인사과장) 인사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7조(사회복지정책실) ① ~ ⑤ (생략)

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, 기초생활보장과, 자립지원과, 기초의료보장과, 지역복지과, 급여기준과, 복지정보기획과, 복지정보운영과, 사회서비스정책과, 사회서비스사업과,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

----- 부이사관·과학
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·서
기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
·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
무관-----.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운영지원과장) -----
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-----.

제6조(인사과장) ----- 부이
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
기관-----.

제7조(사회복지정책실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스일자리과를 두되, 각 과장은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
기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⑮ (생 략)

제7조의2(장애인정책국) ① (생
략)

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
과, 장애인권익지원과, 장애인
자립기반과, 장애인서비스과 및
장애인건강과를 두되, 각 과장
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
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8조(인구정책실) ① ~ ⑤ (생
략)

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
과, 출산정책과, 아동복지정책
과, 아동권리과, 아동학대대응
과, 노인정책과, 노인지원과, 요
양보험제도과, 요양보험운영과,
노인건강과, 보육정책과, 보육
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
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
다.

⑦ ~ ⑮ (생 략)
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
서기관-----.

⑦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장애인정책국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
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인구정책실) ① ~ ⑤ (현행
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
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.

⑦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연금정책국) ① (생략)

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,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0조(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)

① (생략)

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,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보건의료정책실) ① ~ ⑤
(생략)

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, 의료인력정책과, 의료자원정책과, 간호정책과, 의료기관정책과, 약무정책과, 질병정책과, 공공의료과, 응급의료과, 생명윤리정책과, 혈액장기정책과,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

제9조(연금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
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
관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
관 또는 서기관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보건의료정책실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
⑥

부

<u>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다만, 질병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. ⑦ ~ ⑱ (생략) 제12조(건강보험정책국) ① (생략)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, 보험급여과,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⑥ (생략) 제13조(건강정책국) ① ~ ③ (생략)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, 건강증진과, 구강정책과, 정신건강정책과,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 ⑤ ~ ⑩ (생략) 제14조(보건산업정책국) ① ~ ③ (생략)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	<u>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-----. 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. ⑦ ~ ⑱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건강보험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3조(건강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-----. ⑤ ~ ⑩ (현행과 같음) 제14조(보건산업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
--	--

정책과, 보건의료기술개발과, 보건산업진흥과, 보건산업해외진출과, 의료정보정책과,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⑪ (생략)

제15조(원장 등)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,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9조(소록도병원) ① (생략)

② 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,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(생략)

제20조(의료부) ①·② (생략)

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외과과장·피부과장·치과과장·안이비인후
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
-----.

⑤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원장 등) ① -----

----- 임용등급은
가급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소록도병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의료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과학기술서기관으로, 외과과장·피부과장·치과과장·안이비

과장·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
으로,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
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21조의2(센터장 등) ① 오송생
명과학단지지원센터(이하 이 장
에서 “센터”라 한다)의 센터장
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
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
리팀을 두되, 각 팀장은 서기관
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보
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
업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21조의3(원장 등) ① 국립장기
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
사관·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
구관으로 보한다.

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
장기기증지원과, 장기이식관리
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,
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
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
기관으로, 혈액안전감시과장은
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

인후과장·약제과장·간호과장
은 과학기술서기관-----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센터장 등) ① -----

--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
·서기관-----.

② ----- 과학기
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
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
는 행정사무관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원장 등) ① -----
----- 부이
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
는 서기관으로, 혈액안전감시과
장은 과학기술서기관 -----

로 보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32조(사무국장)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

제33조(사무국장)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35조(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보건복지부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,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(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사무국장) -----
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
제33조(사무국장)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-
-----.

제35조(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----- 10퍼센트-----

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,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(3급 또는 4급 1명, 4급 2명,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, 4급 또는 5급 4명, 5급 5명, 6급 6명, 9급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⑨ (생략)

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 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2명), 조제·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(6급 1명, 7급 1명),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7급 1명)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

---.

② -----

----- 27명 -----
----- 7명, --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 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(4급 2명), 조제·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(6급 1명, 7급 1명), 그 밖의 정원 중 2명(4급 2명),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(7급 1명), 국립장기조직혈

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⑪ (생략)

제37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3조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.

1.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관

2.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의약정책관

3. 삭제

4. 삭제

② 「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2조제3항의 홍보기획담당관, 제3조의2제6항의 보건복지상담센터장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, 제7조제6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, 제7조의2제2항의 장애인권

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⑪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익지원과장, 제8조제6항의 출산 정책과장,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·안이비인후과장,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과장 중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을 지정하되,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41조(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) 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, 별표 12의 정원 중 2명(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명,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)은 행정안전부, 1명(행정사무관

제41조(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) ① -----

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

② -----

-----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보건사무관·약무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-----

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
· 전산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)
은 고용노동부, 1명(행정사무관
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
· 전산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)
은 국토교통부, 1명(행정사무관
· 사회복지사무관 · 보건사무관
· 전산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)
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
각각 충원해야 한다.

제42조(필수의료지원관) ① (생략)

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서기관
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③ (생략)

[illegible]

제42조(필수의료지원관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 과학기
술서기관 또는 서기관----

③ (현행과 같음)